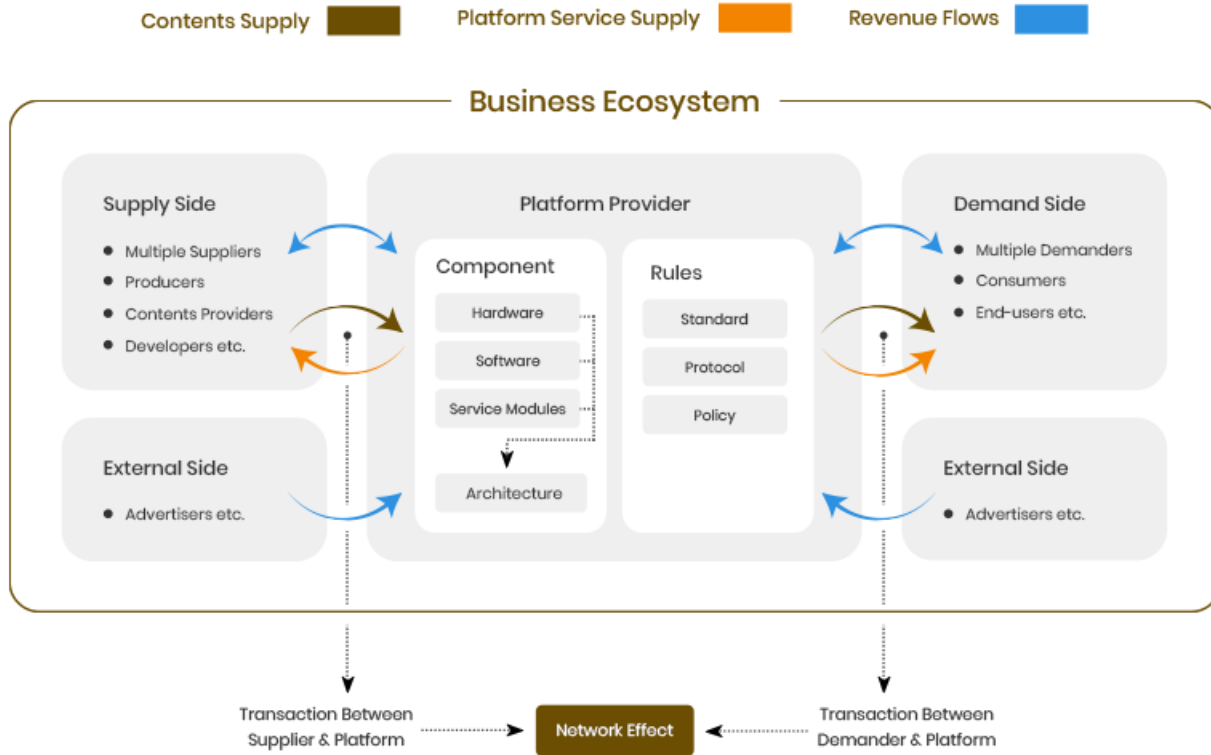


플랫폼 시대의 정보보호 대응체계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대응체계의 필요성

플랫폼 시대의 정보보호 대응체계: 문제 제기

플랫폼 사업자의 특성에 적합한 정보보호 체계의 부재



- **다면시장 구조**

: 복잡한 이해관계 형성

- **다양한 문제 발생**

: 정보 유통량 증가, 공격 노출도 증대

: 참여자 보호 요구증가

- **현행 정보보호 체계**

: 일반 사업자 중심으로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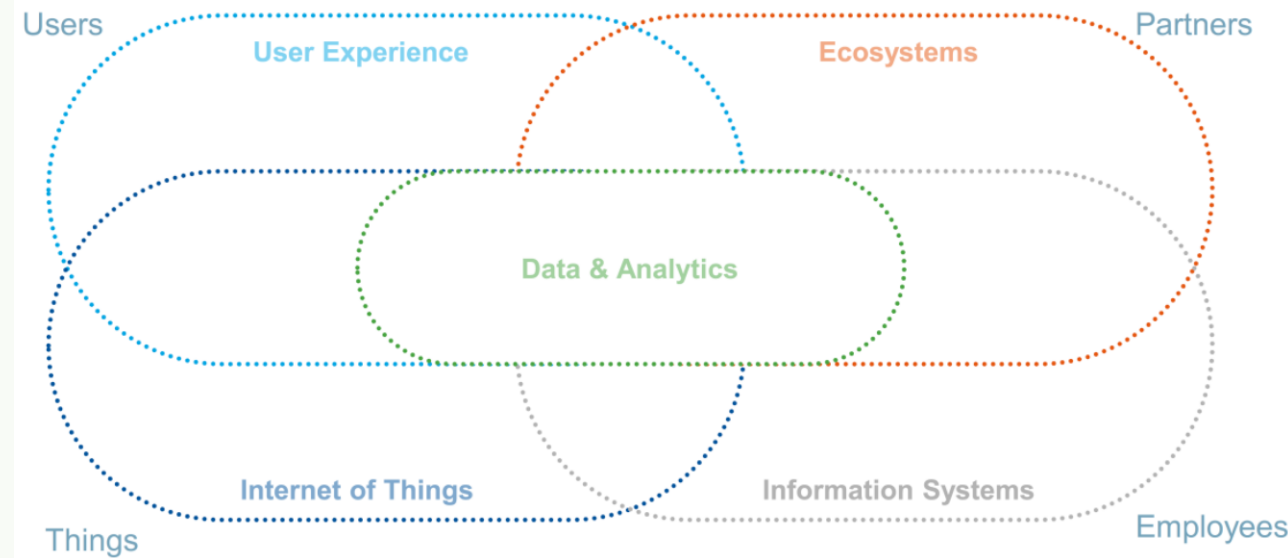
- **플랫폼 특성 고려한 정보보호 체계 필요 ↑**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구조

플랫폼은 에코시스템을 구성하고,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정자

- 현실은 생태계에서의 조정자
: 다수 인식은 보통의 '서비스 제공자'
- 다양한 참여자(이용자, 입점사, 광고주, 제휴사 등)를 포괄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 존재
- 플랫폼의 신뢰 기반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 공평한 게임의 룰 & 정보보호
- 참여자 보호 실패의 결과
: 생태계 전체에 리스크 전파

Moderation & Protection



Trust & Safety

기존 정보보호 대응체계: 한계

플랫폼 사업자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일한 규율을 적용하려 시도

일반 기업

플랫폼 기업

모델	재고 보유형	중개형
수익구조	직접판매 수입	거래수수료 등
기술 구조	자체 전산중심	개방형 구조
참여자	B2C	Multi-sided
핵심자산	제품, 물류 등	알고리즘 등
성장전략	마케팅, 제품	참여자 증대

• 기존의 법령 체계

: 일반적 규율을 플랫폼에 동일하게 적용

• 명확한 한계

: 본질적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함

• 한계로 인한 결과

: 과도하거나 불충분한 보호조치가 병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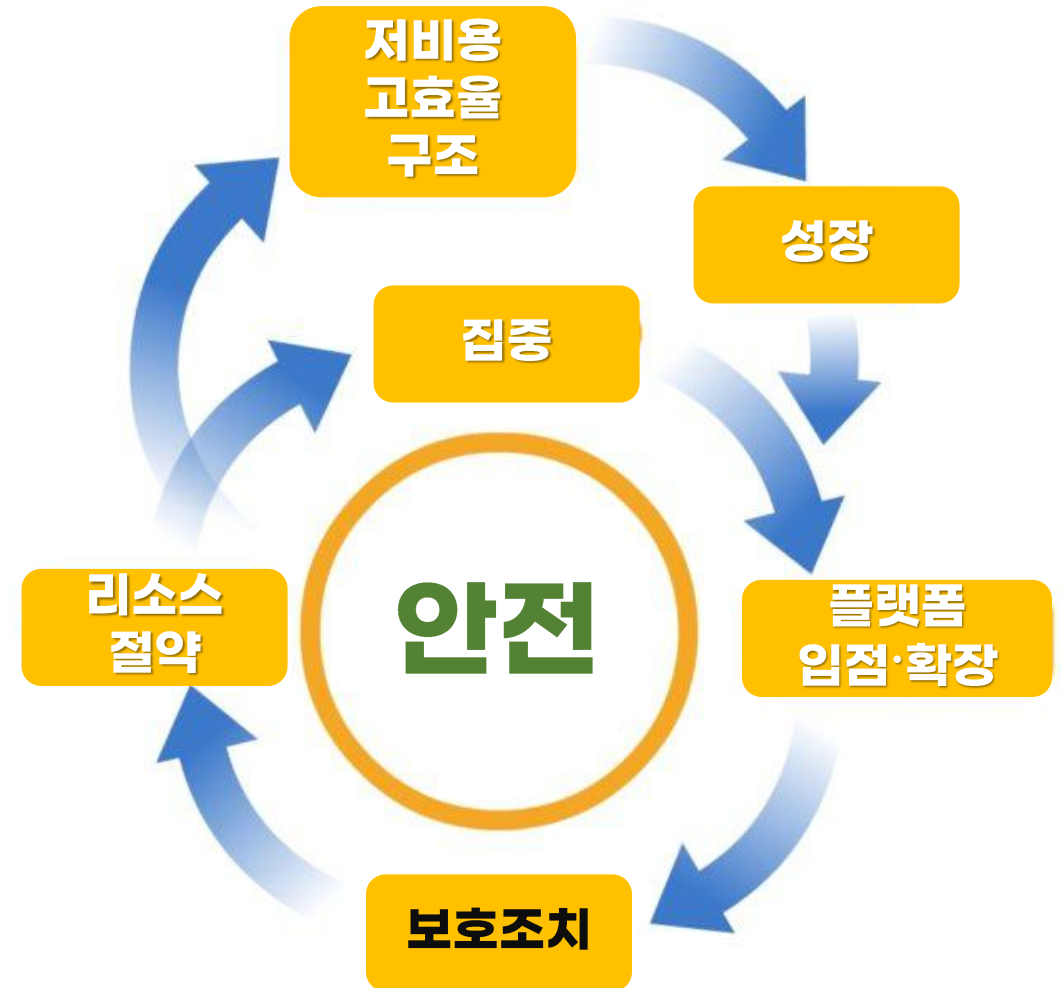
• 변화 방향

: 플랫폼 특성 고려한 '맞춤형 접근 방식'

인식의 전환: 플랫폼 사업자 보호조치의 '레버리징 효과'

[플랫폼의 고도화된 보호조치 → 전체 참여자 혜택 → 네트워크 효과 강화]의 선순환 구조

- 플랫폼의 고도화된 보호조치 도입 효과
: 참여자들이 고루 누리는 혜택
- 입점사 내지 개인사업자
: 별도의 보안투자 없이 플랫폼 이용
- 절약한 리소스의 재분배
: 시간과 비용을 오롯이 비즈니스에 활용
- 플랫폼의 역할
: 정보보호를 '공공재'화 하는 기능을 수행



국내외 플랫폼 규제환경: 비교

국내외 규제환경의 차이는 플랫폼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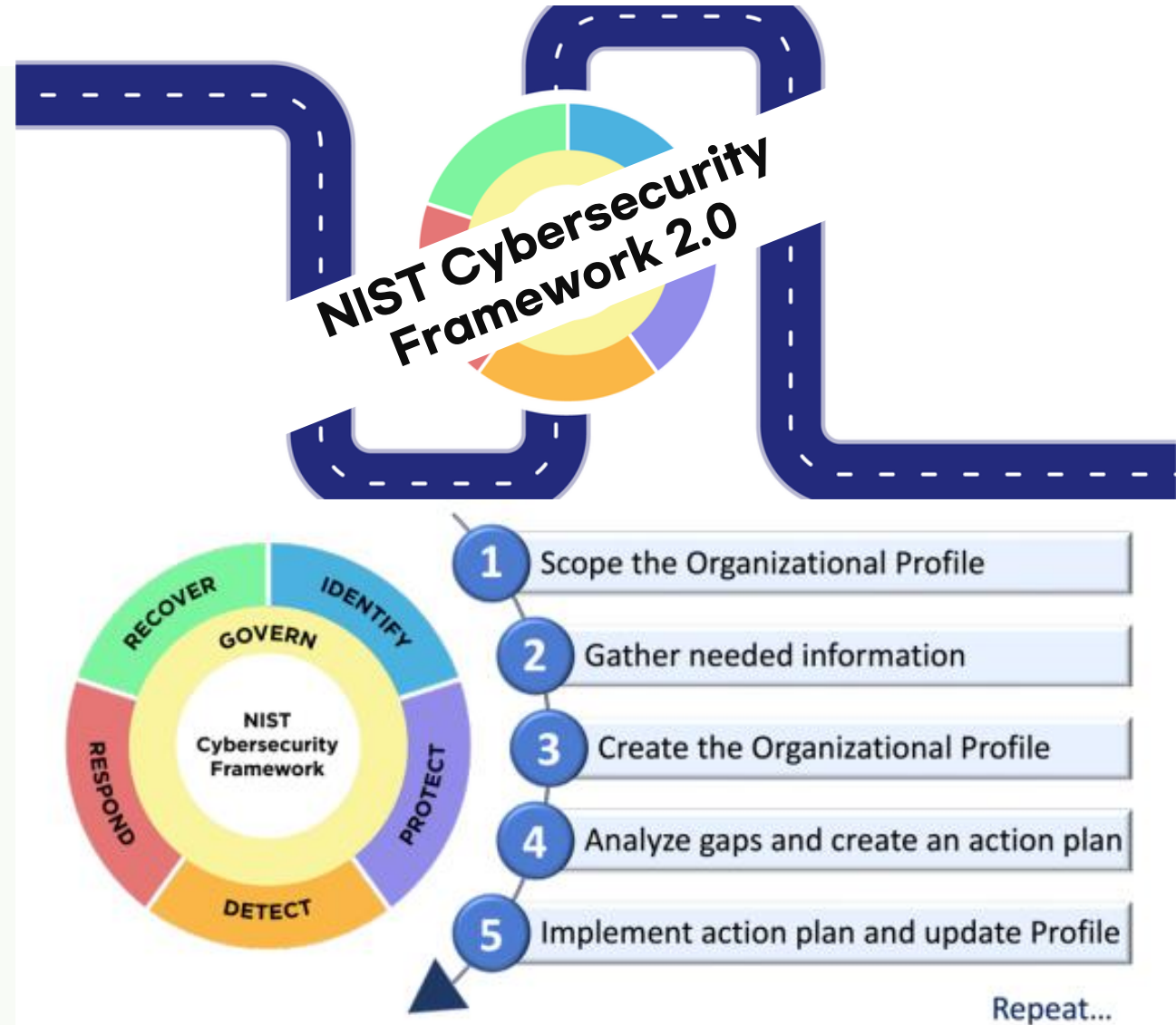


- **국내 - 중첩 규제**로 인한 사업자 규제부담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 **해외 - 플랫폼별 차등 적용**
: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중심 다수 확인
- **글로벌 vs. 국내 플랫폼 경쟁력**
: 규제 준수 비용에서의 차이
- **형평성과 실효성 고려 필요**
: 공정한 게임의 룰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외 사례: (1) 미국

가이드라인 제공과 인증을 통한 민간 자율 대응의 유도

- 민간 자율 대응을 유도
: NIST Cybersecurity Framework
- 낮은 강제력
: 가이드라인 제공 및 인증 유도
- 자율성 보장
: 정부는 표준과 가이드라인에 집중
- 혁신 촉진
: Safe Harbor 제공, 신기술 개발 등



해외 사례: (2) 유럽연합

GDPR & DSA를 활용하여 정보보호와 플랫폼 책임을 동시에 대응

The EU Data Strategy - systematic road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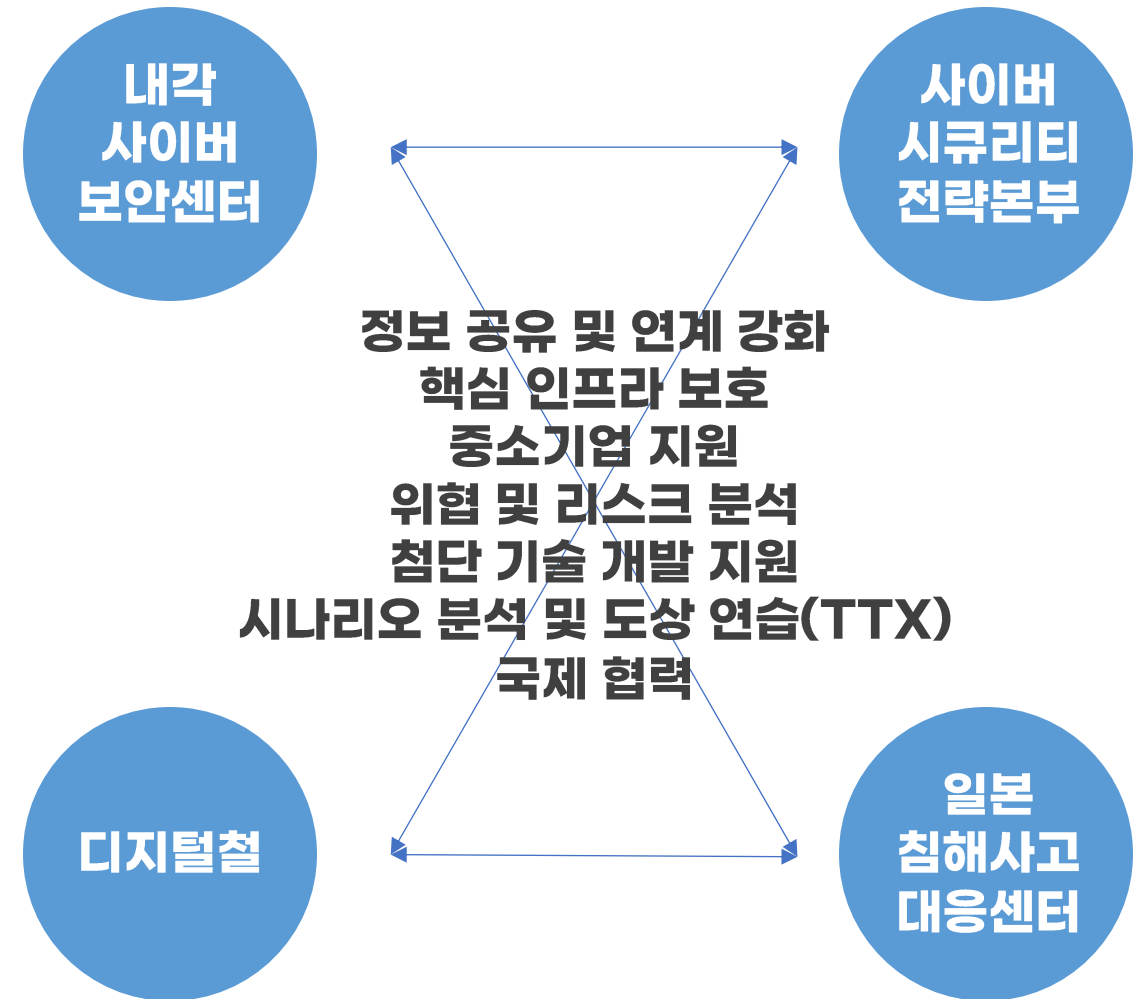


- **원칙 중심의 법제 개발**
: GDPR, DSA, DMA, AI Act 등
- **플랫폼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 도입**
: VLOP 별도 규제
: 투명성 보고와 위험평가 강제
: SME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진행 중)
- **방향성**
: 이용자 권리 보호와 정보보호 균형 추구
: 글로벌 플랫폼 견제, 내부 경쟁력 확보

해외 사례: (3)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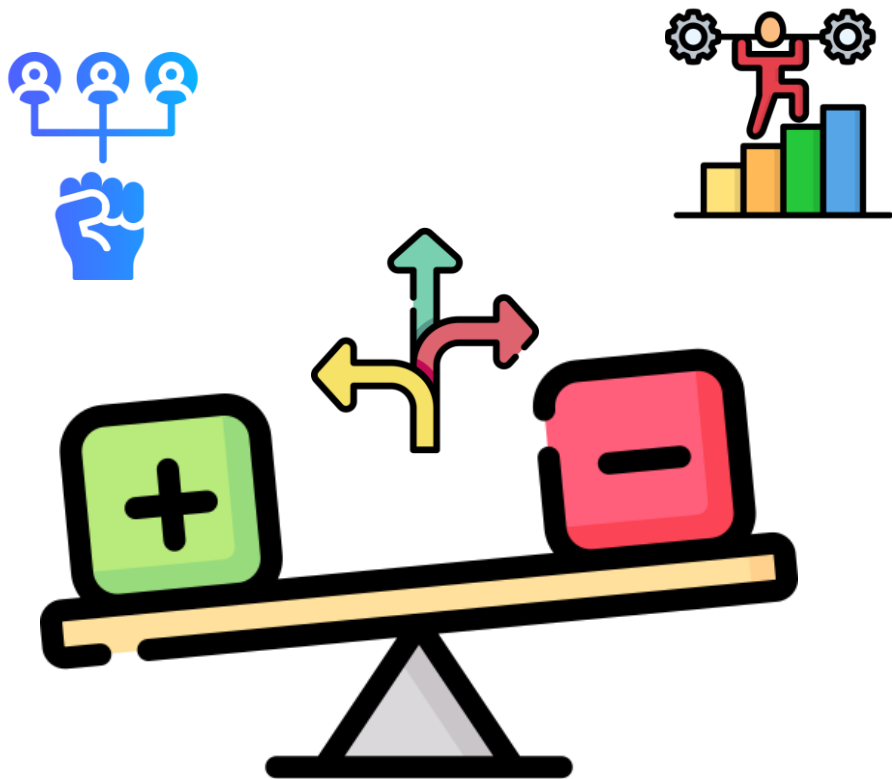
민관 협력 모델과 자율규범의 조화

- **민간 자율규범과 정부 협업**
: “유연한 규제”의 실현
- **중소 플랫폼에 대한 맞춤형 지원**
: 맞춤형 가이드 제공
: 공동 모의 훈련
: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체계 운영
- **민-관 협력 모델**
: 정부가 집중해야 할 지점을 옳게 선정
: 협력 모델을 체계적으로 발전



플랫폼 정보보호 체계의 설계 원칙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성을 가지고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



- 자율성 (autonomy)
: 플랫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 유연성 (flexibility)
: 다양한 기술 환경과 리스크에 대응
- 회복탄력성 (resilience)
: 빠르게 복구하고 재발 방지하는 구조
- 균형성 및 포용성 (balance & inclusiveness)
: 참여자와 사업자간 책임 균형성 확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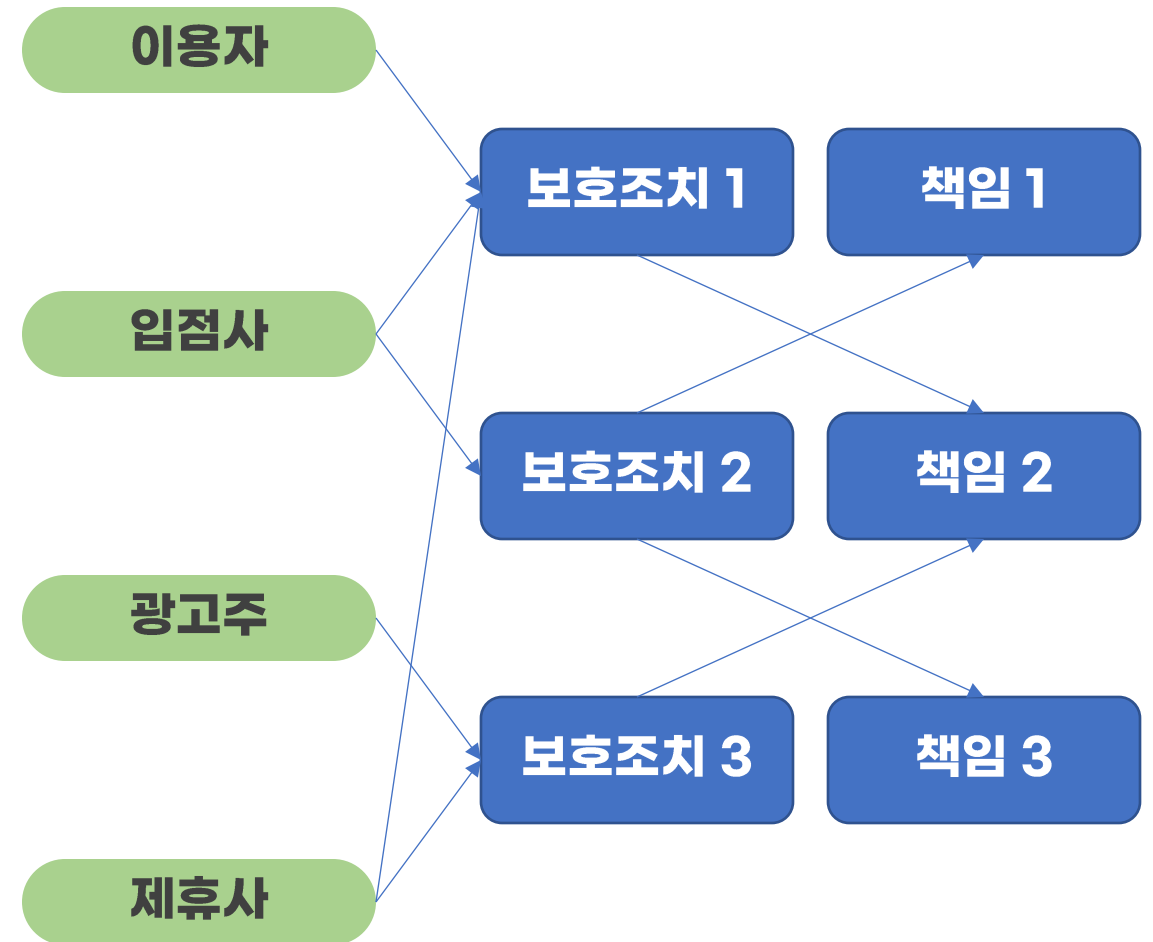


포용성: 배제될 수 있는 취약한 참여자를 각별히 보호함

플랫폼 맞춤형 보호 프레임워크: 제안

보호조치와 책임을 이해관계자 별로 매핑하는 구조의 설계

- 3-Layer 구조
 - 1) 인프라 보안
 - 2) API·서비스 보안
 - 3) 참여자 거버넌스
- 원칙 중심적 접근
 - : Secure by Design
 - : Zero Trust
 - : Participants-Driven Security
- 보호조치와 책임을 이해관계자별로 매핑



책임기반 보호조치의 매핑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맵을 구성



이해관계자 no. 7 - '픽 미' 입점 판매자

- **위협 시나리오**
 - : 마케팅 업체에 의한 판매자 정보 크롤링
 - : 도매업체 가장한 접근
 - : 재고 관리 등 시스템 운영 위탁을 가장한 접근
- **보호조치**
 - : 크롤링 대응을 위한 캡차 등 기술적 조치
 - : 소셜 엔지니어링 방지를 위한 교육
 - : 시스템 운영 위탁 제한을 위한 접근제한 적용
- **위협탐지 방식**
 - : 정기, 비정기 인터뷰 및 이상행위 탐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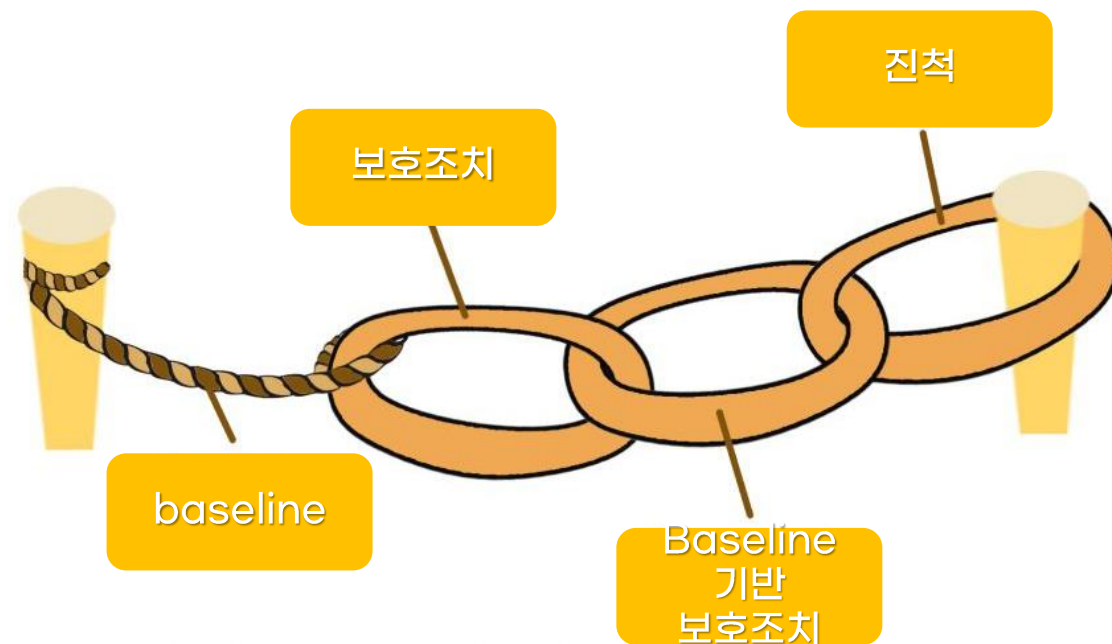
- **이해관계자별 위협 시나리오 정의**
 - : 이해관계자마다 다른 상황을 반영
- **보호조치 카탈로그 설계**
 - : 참여자에 따른 보호조치 카탈로그 설계
 - : 이를 책임범위와 연계하여 관리
- **다층 구조**
 - : 위협탐지, 사고대응, 취약점 관리 등
 - : 입체적으로 설계하되, 이해하기 쉽게

보호수준의 최소 기준과 확장성

보호조치에 대한 baseline의 설정 및 차등적 보호조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시

- Tier-1: baseline
: 모든 플랫폼에 요구되는 최소 보호조치
- Tier 2~3: differential security
: 플랫폼 규모
: 기술 성숙도
: 특성, 성격, 활동(자율적 보호조치 등)
- 실효성 제고
: 자율평가 툴 제공
: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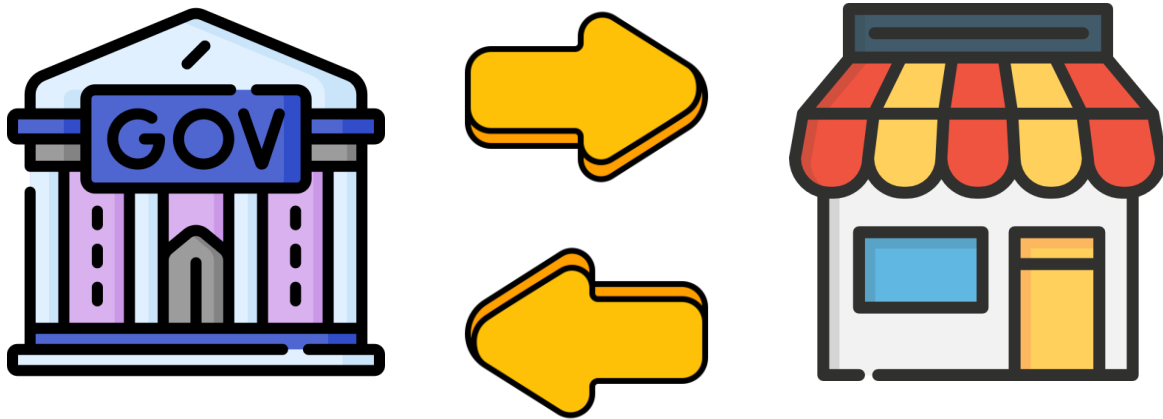
Baseline의 중요성



민관 협력 기반체계 구축

플랫폼을 레버리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

연계, 공유, 협력



레버리징, 경험 전이

- 정보공유센터(ISAC)과 연계
 - : 위협정보 공유체계 확대
 - : 플랫폼의 네트워크를 활용
- 정기적 정보 공유
 - : 정부-산업계 간 정기 협의체 구성
 - : 현장감 있는 논의에 집중
- 협력 모델 다양화
 - : 보안 교육, 공동 R&D
 - : 사고 대응 훈련 등

예상효과 및 기대성과

신뢰의 제고, 비용의 절감, 역량 강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지원

보호 수준 강화



생태계 신뢰 제고

사고 예방,
대응력 강화



사회적 비용 절감

정보보호 역량 확보



글로벌 수준 도약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선순환 구조 완성

요약 및 제언

새로운 방향의 필요성 인식 & 함께하는 발전을 지향

기존 체계는 플랫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새로운 방향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특성에 맞는 정보보호체계를 통해
실효성, 신뢰성, 공공성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민간-이해관계자가
함께 설계하고 발전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